

動力資源部告示 (第81-200号)

石油事業法対象品目に 대한 輸入要領

石油事業法 제17조 및
輸出入期別公告 總則 제3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石油事業法対象品目に 대
한 수입요령을 다음과 같
이 告示한다.

1981年 7月 14日
動力資源部 長官

1. 輸入対象品目

石油事業法 제2조에 의한 石油
및 石油製品으로서 別表에 기재
되어 있는 品目.

2. 輸入節次

別表에 기재된 輸入要領에 따르
되 무역거래법 제10조에 의한
구비서류중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① 수입추천신청서 3부
- ② 오퍼 또는 이에 準하는 서류
- ③ 신청사유 및 용도설명서 1부
- ④ 其他 참고서류

(但, 原油는 ①, ②호에 限
함)

3. 輸入추천對象者

① 原油는 石油類精製業체 및 産
油國정부, 또는 産油國정부의 原
油판매를 대행하는 기관과 직접
原油공급계약을 체결한 者에 限
함.

② 潤滑유 基油는 潤滑유基油
또는 潤滑유의 제조시설 보유자에
限함.

③ 燃料油는 석유류정제업체,
韓國石油開發公社 또는 大需要處
에 限함.

附 則

1. 이 告示는 告示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告示 시행 이전에 종전
의 규정에 의해 이루어진 조치는
이 告示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動力資源部告示 第80-178
号(80.12.31)는 이를 폐지한다.

4. 이 告示는 별도 변경이 없
는 限 移越 적용한다.*

(別表)

CCCN		品 目	輸 入 要 領
2709		石油 및 역청유(原油 에 한한다)	
	01 01-11	1. 石油	動力資源部長官의 추천 을 받아 수입할 수 있 음.
	02 00	2. 역청유 石油와 역청유(原油를 제외한다) 및 이들의 조제품	
	01 99	1. 휘발유 및 그 조제품 가. 自動車 휘발유 나. 항공휘발유	大韓石油協會長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내에 도입되지 아니하는 海外병커링 연 료유는 수입자동 승인임
	02 00	다. 제트油 라. 기 타	
	04 00	① 나프타	
	05 00	② 기 타	
	06	2. 燈油 및 그 조제품 가. 燈油	
	01 99	① 제트燃料油 ② 기 타	
	07	나. 기 타	
	01 99	*백 정 *기 타	
	08 00	3. 輕 油	
	09	4. 重 油 가. 병커C油 나. 기 타	
	11 99	其 他	1. 다음의 것은 大韓石 油協會長의 추천을받 아 수입할 수 있음. ① 潤滑유기유중 파라 핀계기유로서 40℃에 서 동점도(cst)가 24 이상 650미만이고 점 도지수(VI)가 70이 상의 것. 2. 기타의 것은 수입 자 동 승인품목임.

2711		石油가스기타 가스상 탄화수소		
	02	1. 액화가스상의 탄화수 소 가. 메탄		1. 大韓石油協會長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다만 다음의 것은 수입자동 승인품목임. ①天然가스(액화한 것을 포함)
	01	나. 프로판 다. 부 탄		1. 大韓石油協會長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다만 다음의 것은 수입자동 승인품목임. ①등산버너用cartridge에 충전된 가스(포장단위500gr 미만분에 한함)
2714		石油아스팔트, 石油 코 크스 기타의 石油 또 는 역청유의 잔유물		
	01	1. 石油코크스		1. 다음 것은 大韓石油協會長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石油아스팔트
	02	2. 石油아스팔트		2. 기타의 것은 수입자동 승인품목임.
		3. 기 타		
	2	*윤활유溶劑의 정제부 산물(유동점35℃)		
	99	*기 타		
2716		마스켓, 컷백기타의 역 청질 혼합물.		
	01	*컷 백		1. 다음 것은 大韓石油協會長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아스팔트, 역청, 타르 또는 피치유제
	03	*아스팔트, 역청, 타르 또는 피치유제		2. 기타의 것은 수입자동 승인품목임.
	04	*마스켓		
	04	*기 타		

1. 技術導入契約

가. 原材料및 部品을 기술제공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품로부터 부당하게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

나. 기술제공자가 제공한 技術(이하“契約技術”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제조한 製品(이하“契約製品”이라 한다)에 관하여 판매지역을 제한하는 경우. 다만 輸出地域制限의 경우로서 다음 各号의 1에 해당하는 때는 例外로 한다.

① 技術提供者가 기술도입자의 輸出을 제한하는 지역(이하“制限地域”이라 한다)에서 이미 계약 기술을 등록하고 있는 경우.

② 技術提供者가 제한지역에서 계약제품에 대해 정상적인 판매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③ 技術提供者가 제한지역을 第3者의 独占的 판매지역으로 인정하고 있는 경우.

다. 契約製品에 관해 기술도입자의 판매창구, 판매수량 또는 판매가격(“재판매가격”을 포함한다)을 제한하는 경우.

다만, 기술제공자가 “나”류의 制限地域에 대해 기술도입자의 수출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例外로 한다.

라. 競争的 製品의 취급이나 競争的 技術의 使用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마. 契約 당사자의 호혜적인 義務없이 기술도입자만이 기술제공자에게 계약기간중에 개발된 改良技術을 일방적으로 제공 또는 보고하게 하는 경우.

바. 契約技術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하여 기술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사. 기술도입자가 도입한 工業所有權 이외의 기술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후에 이미 제공한 기술자료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계속적 使用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경우.

經濟企副院 告示 (第50号)

國際契約上의 不當한
共同行為 및 不公正去
來行為의 범위 및 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 2 항
의 규정에 의하여 國際契
約에 있어서 부당한 共同
行為 및 不公正去來行為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告示한다.

1981年 7月 15日
經濟企副院長官

아. 技術導入者에게 국제계약 관례상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不當한 구속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2. 合作投資契約

가. 原材料 및 部品 등을 外國投資家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不當하게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

나. 合作投資會社가 제조한 제품을 外國投資家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통해 수출하도록 하는 경우. 다만, 外國投資家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適期에 국제적으로 타당한 가격 및 條件으로 인수할 의무를 지는 때에는 例外로 한다.

다. 外國投資家가 선임할 수 있는 理事數의 비율이 外國投資家の 株式 또는 지분의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라. 內外國投資家の 투자비율이 同一할 경우, 理事會의 결의가 可否同數인 경우에 外國投資家가 선임한 理事가 결정권을 갖도록 하는 경우.

마. 계약당사자간에 紛爭이 발생할 경우에 外國投資家の 國內法을 해석기준으로 적용하게 하거나 內國投資家에게 불리한 중재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바. 內國投資家에게 국제계약 관례상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不當한 구속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3. 借款契約

가. 元利금을 상환할 때마다 貸主가 상환통화를 선택하게 하는 경우.

나. 상환기간을 정하면서 借主의 귀책사유없이 임의로 先償還을 요구하는 경우.

다. 借主에게 不當하게 物資供給者를 지정하는 경우.

라. 借主에게 국제계약관례상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不當한 구속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4. 輸入代理店契約(長期輸入契約)

가. 輸入代理店業者가 계약상 대방인 外國사업자로부터 수입하는 製品(이하 “契約製品”이라 한다)의 部品 등을 당해 外國사업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

나. 契約製品の 재판매창구, 재판매가격 또는 재판매지역을 제한하는 경우.

다. 契約製品과 경쟁적인 제품의 취급을 제한하는 경우.

라. 輸入代理店業者이외의 다른 사업자가 外國事業者 이외의 자로부터 계약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不當하게 제한하는 경우.

마. 輸入代理店業者에게 국제계약관례상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不當한 구속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5. 長期輸入契約

長期輸入契約에 있어서의 不當한 共同行爲 및 不公正去來 행위의 범위 및 기준은 수입대리점계약상의 不當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附 則

(시행일) 이 告示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動力資源部 公告

(第81-19号)

石油類輸出 추천要領

1981年度 下半年 및 1982年度 上半年 輸出入期別 公告 總則 제 6 조 제 1 항의 規定에 의거 動力資源部長官의 수출추천 품목에 대한 수출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公告한다.

1981年 7月 14日
動力資源部長官

1. 추천대상품목

CCCN	추천 대상 품목
2709	石油 및 역청유(原油에 한한다.)
2710	1. 부분정제한 石油 (TOC 포함) 2. 휘발유 (Gasoline, Naphtha) 3. 燈油 (Kerosene) 4. 輕油 (Diesel) 5. 重油(輕質, 中質, 重質) 조유 (Residual Fuel Oil)
2711	6. 제트油 1. 프로판 2. 부탄

2. 추천대상자: 精油會社

3. 추천범위 및 基準

가. 國內需給上 지장이 없는 범위내.

나. 輸出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구비서류

가. 수출허가(승인) 신청서 3부

나. 수출신용장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다. 사유서 1부.

附 則

1. 이 要領은 公告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要領은 별도 변경이 없는 限 移越 적용한다.